

## 최신 판례

계엄법위반 형사재심 관련 재항고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7모107]

### 계엄법위반 형사재심 관련 재항고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공소사실의 요지

·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 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가 발령되었음

-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소위 '삼청교육대'로 알려짐),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

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대원으로 폐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 장소를 빠져나가 이탈하였음

### ■ 재심대상판결 확정

- 피고인은 계엄법 제15조[각주]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1980.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1. 2.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 ■ 재심사건 진행 경과

- 피고인은 2015. 12. 30.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필요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음
- 항고심(원심)은 미첨부서류가 보완된 다음,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무효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음
-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함

## ■ 대법원의 판단

### ■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 ■ 결정 결과

-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임
- 이와 같은 근거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판단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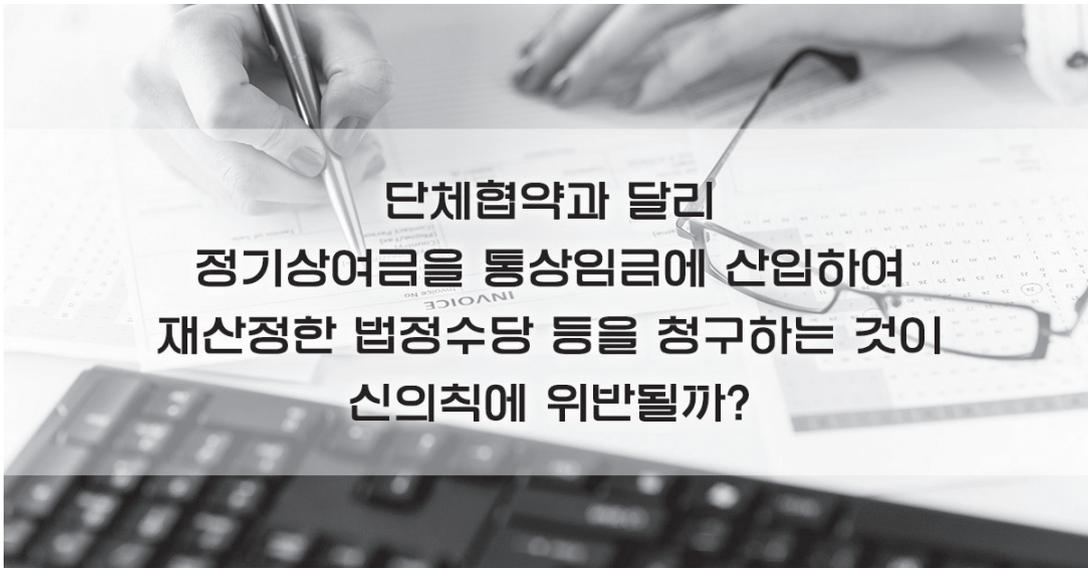
- 이 사건 계엄포고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 중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부분은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됨
-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

-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 ⇒ 검사의 재항고 기각

#### ■ 결정의 의의

- 과거 긴급조치 또는 계엄 등의 법령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결정은 ①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②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③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궤를 같이 하고, ④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⑤ 1972. 10. 17.자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 될까? [대법원 2016다10131]



####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의 급여규정과 단체협약(2010년 및 2012년)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은 제외되어 있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8.부터 2013. 12.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음

#####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들 일부 승소
- 원심 : 원고들 승소 (청구취지 변경)
  - 피고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750%(2010년 단체협약) 또는 800%(2012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년 짝수 월의 특정일자와 명절(설날과 추석)에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위 정기상여금은 기능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

- 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한편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피고의 추가부담금액과 피고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 판결의 결과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판단의 근거는 원심과 같음

▣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음
-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행위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

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 15422, 1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다시 산입하여 재산정한 수당과 중간장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법리나 판단기준을 판시한 것은 아님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법위반의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2016도14781]



###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공소사실의 요지

-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박찬궁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함)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를 발령하였음.
- 피고인은 1979. 10. 20. 12:30경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배반하는 언론을 하였음.

#### ■ 소송의 경과

- 피고인은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0. 9. 27.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함), 대법원은 1981. 2. 1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부산고등법원은 2016. 7.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 대법원의 판단

###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와 심사기관
-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무죄 확정)

### ■ 판단의 근거

-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
-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 요컨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법원이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나아가 이 판결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하였음.
-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저지른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18도11514]



### ▣ 사안의 내용

#### ■ 사안 개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렘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안임

#### ■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양육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마카오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 오○○가 주중에는 지방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가 임차한 다른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로 지내왔음

-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해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 오○○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송○○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졸피렘 성분의 수면제를 수십알 처방받고 피고인 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송○○에게 건네주었음
- 피고인 송○○는 2016. 4. 22. 19:35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피해자 오○○로 하여금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음

·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행사]

- 피고인들은 2016. 2. 28.경 피해자 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편을 피해자 오○○, 아내를 피고인 송○○, 증인을 피고인 황○○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2016. 2. 29. 혼인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이 피해자 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송○○가 2016. 2. 29. 혼인신고한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이 입력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음

·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들이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오○○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송○○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 A, B에게 사망한 오○○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 C에는 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

■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함
- 원심 :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와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등)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주요 판단내용
- 피고인들은 살인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살해에 사용된 도구가 니코틴 원액인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용액인지도 불확실하며, 졸

피뎀과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시간적 간격, 투여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괄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오○○가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시고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오○○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만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피고인들이 살인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했는지
- 피고인들이 오○○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는지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운지

■ 판결 결과

- 피고인들의 상고기각

■ 판단 근거

-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등을 수긍함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등을 수긍한 사례임

##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2018도15035]



### ▣ 사안의 내용

####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7. 9. 6.경 처 최□□이 자살하자 최□□을 대신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 이○연(여, 14세)[각주]의 친구인 피해자 김△△(여, 14세)가 최□□을 닮았다는 이유로, 이○연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
-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젖은 수건,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여 죽게 함

- 피고인은 이○연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위 여행용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강원도 야산에 집어 던져 사체를 유기함
- 그 밖에 피고인은 최□□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 최□□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범행,

각종 보험사기 범행,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범행,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 등을 저질렀음

■ 소송의 경과

- 제1심 : 사형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원심 : 무기징역 · 피고인 및 검사 상고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

■ 판결 결과

쌍방 상고기각

■ 판단 근거

- 피고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다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취지)에 대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관례임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법원 관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 판결의 의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료/법원사람들)